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25
----------	------------

제안년월일 : 2018년 4월 12일

제안자 : 윤영위원장

1. 수정이유

- 법적 통일성과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와 중복 또는 충돌되는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의원외교연맹에 대한 정의와 초청외교활동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함.
- 의원외교활동과 의원외교연맹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를 일부 조정함(안 제3조).
- 외국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의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6조).
-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외교활동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공외교법」,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외교활동을 위하여”를 “외교활동 지원을 위하여”로 한다.

안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원외교활동”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외활동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외교활동으로써 외국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
2. “외국방문외교활동”이란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을 말한다.
3. “초청외교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가. 제3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나. 서울특별시의 초청으로 서울특별시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

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4. “의원외교연맹”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외국 지방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와 친선활동 등을 통해 양의회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외교단체를 말한다.

안 제3조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어느 하나를 말한다.”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원
2. 의회 상임위원회
3. 의회 의원외교연맹

안 제4조 제1항 중 “지방도시 의원들과의”를 “지방의원들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에 관한”을 “운영 등에 관한”으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 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기본계획의 수립, 허가절차, 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준용한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조(중전의 제6조) 제1항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방문외교활동에 대하여는”을 “외국방문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조제3호에 따른 초청외

교활동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및 관련규정에 따라 외빈초청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제8조(종전의 제7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은”을 “의장”으로 하여 같은 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9조(종전의 제8조) 제1호 중 “국내외의”를 “국내·외의”로 한다. 제6조(초청외교활동의 운영) ① 초청외교활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활동 조례」 를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4조 중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
2.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5조 중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
3.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6조 중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
4.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7조 중 “국외활동”과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보고, “방문결과”는 “초청결과”로 본다.
5.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8조 중 “공무국외활동계획서”는 “초청외교활동계획서”로 본다.

③ 초청외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수행주체는 초청일 30일 전까지 초청외교활동계획서를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외교활동 대표자는 초청외교활동계획을 제안설명해야 하며, 의장은 제출받은 초청외교활동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초청외교활동 수행주체는 초청외교활동을 마친 후 20일 이내에 초청외교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의회 전문도서관에 소장·비치하거나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정안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조례안</u>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u>외교활동을 위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외교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u>외교활동 지원을 위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외교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외교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으로서 의원의교활동 수행수체가 서울특별시회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외국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 2. “외국방문외교활동”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의활동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의 활동을 말한다. 3. “초청외교활동”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가. 제3조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나. 서울특별시의 초청으로 서울특별시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서울특별시의회 초청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회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외교활동”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의활동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의활동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외교활동으로써 외국방문의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 2. “외국방문외교활동”이란 「공무국의활동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의활동을 말한다. 3. “초청외교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가. 제3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나. 서울특별시의 초청으로 서울특별시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 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원 안	수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의 초청</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4. “의원외교연맹”이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외국 지방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와 친선활동 등을 통해 양 의회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외교단체를 말한다.</p>
<p>제3조(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의장 2. 서울특별시의회부의장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연맹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p>제3조(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 2. 의회 상임위원회 3. 의회 의원외교연맹
<p>제4조(의원외교연맹) ① 의원은 외국 지방도시 의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외교연맹을 결성할 수 있다.</p> <p>② 의원외교연맹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의원외교연맹) ① 의원은 외국 지방의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외교연맹을 결성할 수 있다.</p> <p>② 의원외교연맹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의원외교활동의 운영) 의원외교활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허가절차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의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제5조(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 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기본계획의 수립, 허가절차, 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국의활동 조례」를 준용한다.</p>
<p>〈신 설〉</p>	<p>제6조(초청외교활동의 운영) ① 초청외교활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국의활동 조례」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원 안	수정안
	<p>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의활동 조례」를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국의활동 조례」제4조 중 “공무국의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 2. 「공무국의활동 조례」제5조 중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의출장”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 3. 「공무국의활동 조례」제6조 중 “공무국의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 4. 「공무국의활동 조례」제7조 중 “국의활동”과 “공무국의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보고, “방문결과”는 “초청결과”로 본다. 5. 「공무국의활동 조례」제8조 중 “공무국의활동계획서”는 “초청외교활동계획서”로 본다. <p>③ 초청외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수행주체는 초청일 30일 전까지 초청외교활동계획서를 「공무국의활동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외교활동 대표자는 초청외교활동계획을 제안설명해야 하며, 의장은 제출받은 초청외교활동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p> <p>④ 초청외교활동 수행주체는 초청외교활동을 마친 후 20일 이내에 초청외교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의회 전문도서관에 소장·비치하거나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p>
제6조(여비지급) ① 의원외교활동 수행	제7조(여비지급) ① 의원외교활동 수행

원 안	수정안
<p>주체의 <u>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방문의 교활동에 대하여는</u>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u>지급한다.</u></p> <p>② <u>제2조제3호에 따른 초청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빈초청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주체의 <u>외국방문의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u>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u>지급할 수 있다.</u></p> <p>② <u>의원의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제7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은</u> 의원의 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u>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u> 의원의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p> <p><u><삭 제></u></p>
<p><u>제8조(의원의교활동의 지원)</u>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는 의원의교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의교활동에 필요한 <u>국내·외의</u> 의전(儀典)과 통역 2. 의원의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의회·정부나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체계 구축 3. 의원의교활동에 필요한 교육실시 4. 의원의교활동과 관련한 시민 홍보 5. 그 밖에 의원의교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u>제9조(의원의교활동의 지원)</u>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는 의원의교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의교활동에 필요한 <u>국내·외의</u> 의전(儀典)과 통역 2. 의원의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의회·정부나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체계 구축 3. 의원의교활동에 필요한 교육실시 4. 의원의교활동과 관련한 시민 홍보 5. 그 밖에 의원의교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외교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외교활동”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외활동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외교활동으로써 외국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
2. “외국방문외교활동”이란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을 말한다.
3. “초청외교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 가. 제3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 나. 서울특별시의 초청으로 서울특별시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

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4. “의원외교연맹”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외국 지방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와 친선활동 등을 통해 양 의회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외교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의원
2. 의회 상임위원회
3. 의회 의원외교연맹

제4조(의원외교연맹) ① 의원은 외국 지방의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외교연맹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연맹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 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기본계획의 수립, 허가절차, 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초청외교활동의 운영) ① 초청외교활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4조부터 제9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4조 중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
2.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5조 중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
3.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6조 중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
4.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7조 중 “국외활동”과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보고, “방문결과”는 “초청결과”로 본다.
5.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8조 중 “공무국외활동계획서”는 “초청외교활동계획서”로 본다.

③ 초청외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수행주체는 초청일 30일 전까지 초청외교활동계획서를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외교활동 대표자는 초청외교활동계획을 제안설명해야 하며, 의장은 제출받은 초청외교활동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초청외교활동 수행주체는 초청외교활동을 마친 후 20일 이내에 초청외교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의회 전문도서관에 소장·비치하거나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여비지급) 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외국방문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원외교활동의 지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외의 의전(儀典)과 통역
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의회·정부나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실시
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시민 홍보
5. 그 밖에 의원외교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